

제8조(법적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
 처를 취한다.

제9조(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0조(손익의 귀속) ①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② 제16조에 따른 중도해지 및 제17조에 따른 중도인출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11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12조(신탁기본보수) ① 신탁기본보수(이하 “기본보수”라 한다)는 다음의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다. 이 경우 신탁원본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
 (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text{기본보수} = \text{신탁원본평균잔액} \times \text{연} (\quad) \%$$

②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보수 차감일 부터 제3항에서 정한
 기본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기본보수를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을 지급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탁수익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수익보수(이하 “수익보수”라 함)를 수익보수를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
 액이 최초 신탁원본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신탁원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날로부터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까지 일부해지금액이 있
 는 경우 일부해지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② 수익보수 계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영업일 전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일부해지 포함)를 신청한 날 이후 ()영업일이 지난 날

③ 기준지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
 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2. 신탁재산의 성과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④ 이하 이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의미한다.
 - 가.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에서 신탁원본과 기본보수를 뺀 금액
 -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 이후 수익보수 계산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탁이익
2. 신탁수익률이란 신탁수익을 신탁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3. 기준지표수익률이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기준지표에 대비하여 수익보수 계산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기준지표
 상승(또는 하락) 비율을 의미한다.

⑤ 수익보수 가액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신탁수익률이 0 보다 크고 기준지표수익률보다 큰 경우

$$\text{수익보수} = \text{신탁원본} \times (\text{신탁수익률} - \text{기준지표수익률}) \times (\text{수익보수율})\%$$

2. 신탁수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기준지표수익률보다 크지 않은 경우 수익보수는 0 원으로 한다.

⑥ 제5항의 수익보수 산정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기준지표는 다음과 같다.

※기준지표: (예: KOSPI)

⑦ 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계산된 수익보수를 제1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재산 중에서 받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수익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이익의 계산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신탁원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분기말(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월이 경과한 날
3. 신탁계약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4. 신탁기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5. 그 밖의 날()

② 신탁이익 계산의 대상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③ 제1항의 정기지급은 위탁자가 사전에 신청한 위탁자 명의의 입출금계좌로 지급한다.

제15조(세금 및 비용)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한다.

제16조(중도해지) ① 제4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기간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해지하는 경우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해지하는 경우
4. 관련법규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경우

④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가 선취 신탁보수를 받은 때에는 중도해지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선취 신탁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신탁보수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후취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7조(중도인출) ①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신탁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인출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없이 인출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자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2.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자 본인의 특수교육비

제18조(증여세) ① 위탁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탁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을 증여받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으로 정하

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다만 제17조2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수익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9조(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신탁계약이 전부 해지되는 경우
-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5조제1항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보수는 제12조에서 정한 기본보수의 일정비율(예: 1/3)로 계산한다.
- ③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는다.
- ④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익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익을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⑦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한다. 다만 운용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 ⑧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된 경우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된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20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거나 담보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21조(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이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고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3조(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관계법규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6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세법, 신탁법 등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0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 신탁계약일 :

■ 계좌번호 :

■ 세부내역

구분	계약내용		계약서 근거
신탁금액	금 원정 (₩)		제2조
신탁기간	년 월 일부터 사망시 까지		제4조
수익자	원본수익자	주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3조
	이익수익자	주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운용내역 통지여부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자택우편 <input type="checkbox"/> 직장우편 <input type="checkbox"/> 통보생략(불원)		제7조
신탁보수율	기본보수	<input type="checkbox"/> 선취 : 신탁금액 × ()% <input type="checkbox"/> 후취 : 신탁원본평균잔액 × 연()% × 신탁기간(일수) ÷ 365(윤년은 366일)	제12조
	수익보수	<input type="checkbox"/>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 후 : 기본보수율 × ()% ■ 신탁원본 × (신탁수익률-기준지표수익률) × ()% ■ 기준지표 : ()	제12조 제19조 제13조
이익계산 및 지급	■ 매분기말(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탁계약일로부터 매()월이 경과한 날 ■ 신탁계약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 신탁기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 ■ 그 밖의 날 ()		제14조
중도해지수수료	■ 신탁계약일로부터 ()미만 경과 시 : 해지신탁원본의 ()% ■ 신탁계약일로부터 ()이상 ()미만 경과 시 : 해지신탁원본의 ()% ■ 신탁계약일로부터 ()이상 경과 시 : 해지신탁원본의 ()%		제16조

■ 신탁재산의 운용지시 (계약서 근거 제5조)

신탁자금 운용방법	세부 운용지시 내용	운용기간	위탁자 확인
			(서명 또는 인)

■ 특약 (계약서 근거 제24조)

■ 위탁자

주소: _____
 생년월일/사업자번호: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수탁자

주소: _____
 성명: 주식회사 우리은행
 _____ (서명 또는 인)



[별첨2] 신탁재산 운용방법(우리장애인사랑신탁)

다음의 신탁재산 운용방법(1. 내지 25.에서 정한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첨1]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출금	10. 외화증권	19. 공사채형수익증권
2. 콜론	11. 보증어음	20. 주식형 수익증권
3. 환매조건부채권	12. 자유금리기업어음	21. 그 밖의 증권
4. 국채	13. 표지어음	22.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5. 통화안정증권	14. 증개어음	23. 증권지수의 선물거래
6. 그 밖의 금융채	15. 발행어음	24. 증권의 옵션
7. 지방채	16. 양도성예금증서	25. 그 밖의 신탁법 및 신탁업 관계 법령에 서 정한 방법
8. 사채	17. 신용카드채권	
9. 주식	18. 개발신탁수익증권	

-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부도가 발생한 때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어음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일로 정한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신탁기간 끝나는 날 이전에 만기가 다 된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의 불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합니다.